#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71

발의연월일: 2021. 11. 22.

발 의 자:최종윤·김승남·김정호

김홍걸 • 민병덕 • 박상혁

오영환 • 윤준병 • 이용선

인재근 · 정일영 · 조승래

최혜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의 혈연을 중심으로 연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여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하여 지인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장례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전에 본인이 원하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사목 및 제12조제2항·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사.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자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	16
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	
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	
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사.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u>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u>또는 「민법」의 유언에</u>
	<u>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u>
	<u>방식으로 지정한 자</u>
<u>사.</u> (생 략)	<u>아.</u> (현행 사목과 같음)
<u>아.</u> 가목부터 <u>사목</u> 까지에 해	<u>자.</u> <u>아목</u>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저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 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 신에 대해서는 <u>일정</u> 기간 매장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신 설>

② 시장등은 <u>제1항</u>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
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
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
<u>다.</u>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
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④제1항 및 제2항</u>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